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5. 12. 7.

교육 사회 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0일

3. 제 안 이 유

○ 현행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에 의거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의 규정에 준용하여 징수토록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일원화시키고 민원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검정고시에 관련된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
-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5.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증시하여 별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고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첨